

제5강 보세화물에 대한 관리

Welcome to
Korea Customs service



<주요 강의내용>

1. 보세화물취급업자 등의 등록
2. 물품의 반입과 반출
3. 보수작업
4. 보수작업시 유의사항
5. 장치물품의 해체와 절단
6. 장치물품의 폐기
7. 수입 또는 반송신고 기한
8. 장치기한의 제한과 강제매각
9. 국고귀속 또는 폐기

1. 보세화물취급업자 등의 등록

- 보세화물 등을 취급하는 다음 사업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보세운송업자
 - 외국무역선(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 기용품,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물품,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개항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물품의 반입과 반출

- 보세구역 또는 유사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
 - 수입물품의 반입 :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입항일자, 입항세관, 적재항,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 번호나 항공화물 운송장 번호, 화물관리 번호,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
 -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포함)의 반입 : 물품의 반입일시,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 장치기간
 - 반출신고 : 반출신고번호, 반출일시, 반출유형, 반출근거번호, 화물관리번호,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

3. 보수(補修)작업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보수작업이 가능
- 단, 그 보수작업으로 인해 대상물품의 HS 품목분류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보수작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등)
-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한 절단 등)
-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

4. 보수작업시 유의사항

- 보수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세관장에게 보수작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보세물품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보수작업을 할 수도 있다.

-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 따라서 보수작업 후 당해 물품을 수입할 때는 부가된 물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될 수 있다.

-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5. 장치물품의 해체와 절단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허가를 얻으면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 수입고철 등이 주요 대상
 - 세관장은 화물관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작업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 부정유출을 방지

- 해체와 절단 작업이 완료된 경우 작업 개시전, 작업중, 작업종료상태를 각각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장치물품의 폐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 장치기간의 경과 등으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부패 또는 변질하거나, 유효기간의 경과, 상품가치의 상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화주 등에게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직접 폐기할 수 있다.

7. 수입 또는 반송신고 기한

- 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또는 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하였을 때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 만일 30일 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현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실제로 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다음 장소에 반입된 물품이다.
 - 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 나. 부산항과 인천항의 컨테이너 CY와 CFS
 - 다. 부산항 및 인천항의 재래부두내 지정장치장

8. 장치기간 제한과 강제매각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
 - 장치기간은 보세구역의 종류와 소재지, 그리고 물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보세구역 특허기간으로 다양
 - 장치기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관세청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

- 장치기간 경과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반출통고를 한 다음, 그래도 반출되지 아니할 경우 강제 매각한다.
 -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최초 매각예정가격은 과세가격으로 하며, 입찰에서 매각되지 않을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에 이를 때까지 매 입찰시마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한다.

9. 국고귀속 또는 폐기

- ❑ 장치기간경과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강제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은 국고귀속 처리한다.
- ❑ 만일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화주 등에게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한다.
-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화주 등은 자기 비용으로 당해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않을 때에는 세관장이 대신 폐기한 다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